

A Study on the Major Contents of the Examining Toxic Substance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화평법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업 대응 방안

Writer

정 엠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
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전 석 종
남앤드남 인터내셔널 이사

Contents

I. 개요

II. 주요내용

1. 화평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
2. 현행 화평법, 개정안, REACH 법령 비교
3. 화평법 개정 일정

III. 산업영향 및 기업 대응방안

참고자료

※ 48쪽부터 53쪽까지 기재되는 '화평법 전
면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업 대응 방안'에 관
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
제기업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 전
재합니다.

I. 개요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의 살생물질 OIT(옥틸이소티아졸론) 방출,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티아졸리논) 치약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6년 11월 29일 정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2016년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

II. 주요내용

1. 화평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양과 용도를 보고하던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1톤 이상 제조·수입 시 등록이 필요해졌다.

기존 화학물질등록은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유예기간을 부

[표 1]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유예기간

등록유예기간	물질등록 톤수
2021년	1톤 이상 CMR*물질 또는 1,000톤 이상
2024년	100~1,000톤
2027년	10~100톤
2030년	1~10톤

* Carcinogenic, mutagenic of toxic for reproduction :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여했다.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유예기간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을 할 수 있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전등록기간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지정될 예정이며, 사전등록 시 부여되는 예상 유예기간이 있다.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일이 아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 신고 시 물질명, 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보다는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면제받은 0.1톤 미만 물질 및 고분자 물질은 신고가 필요하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호(100kg미만 면제) 및 제5호(고분자 면제)에 해당해 면제 확인을 받은 자는 물질의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후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 신고해야 한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면제범위 밖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전량 수출면제 톤수 범위의 제한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10톤 이하 전량수출물질만이 면제대상이었으나 톤수 범위 제한을 폐지해 수량에 관계 없이 전량수출인 경우 면제가 가능해진다.

등록의무 불이행 시 처벌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의무 이행 주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어 법 위반 시 처벌대상은 제조·수입자였으나 사용·판매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등록 또는 면제받지 못한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하는 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제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및 판매자는 반드시 공급자의 등록의무를 확인해야만 한다.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에는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하), 법 위반에 따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수입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 대상물질이 확대된다.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 관련 정보, 안전사용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대상이 확대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회시스템)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량 미만 함유물질 정보는 수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혼합물은 등록된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량이 환

[표 2] 화평법과 살생물제품의 정의의 상이함

화평법	살생물제법
(제2조 제15호)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제2조 제1호)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또한 영업비밀은 보호되나 유해 화학물질은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어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을 관리할 예정이다. 살생물제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함께 살

생물질 관리를 포함한다. 살생물제법에 따라 살생물제로 승인받은 자는 해당 살생물질을 화평법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현행 신고대상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에서 위해우려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로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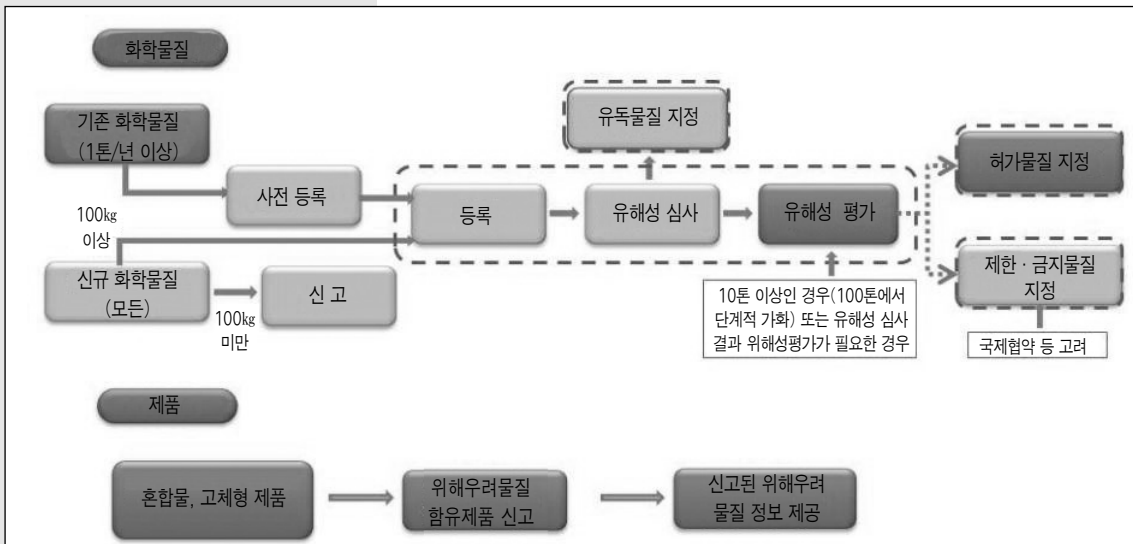
고형 완제품의 신고 예외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고형 완제품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화평법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시 선임자를 수입자로 간주하고, 실제 화학물질·제품 수입자는 하위사용자로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선임자에게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서는 선임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외 제조자 등에 의해 선임된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선임된 자가 등록된 수입자로 변경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법령별 제품에 대한 정의가 상

[그림 1] 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체계



[표 3] 현행 화평법, 개정안 및 REACH 법령 비교

항목	현행	개정안	REACH	비고
제조 등의 보고제도	·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폐지	· 보고제도 없음	
등록대상	· 모든 신규물질 ·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 100kg 이상 신규물질 ·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 1톤 이상 기존 물질 및 신규 물질	· 100kg 미만 신규물질은 신고 대상
사전등록	· 없음	· 사전등록제도 도입 · 등록유예기간 부여	· 사전등록제도 등록유예기간 있음	
유해법 등록면제 물질	· 등록면제 인정	· 신고 필요 · 신고사항에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필요	· 관련 소급적용규정 없음	· 유해법 면제범위를 벗어나면 등록 또는 면제신청 필요
전량 수출	· 연간 10톤 미만만 인정	· 톤수 제한 없음	· 관련 면제규정 없음	
등록변경 신고사항		· 선임된 자(OR) 변경 · OR 등록 후 수입자 변경	· OR 변경 시 정보변경 필요	· 변경신고대상 추가
등록의무 불이행 처벌대상	· 제조자 · 수입자	· 제조자 · 수입자 · 사용자 · 판매자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 · 판매자 처벌규정 없음	· 사용자 · 판매자는 공급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과징금	· 없음	· (신설) 매출액의 5% 이하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10억 이하	· 과징금규정 없음	· 판매자도 부과 가능
정보제공	· 등록된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양도자	· 등록된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양도자 ·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 SDS 제공 시 SDS에 위해성관리 대책을 기재 · SDS 미제공 시 별도로 등록정보, 위해성관리대책에 대한 정보 제공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품 신고	· 제품에 개별 유해화학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고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고품안제품 제외	· 제품에 개별 위해우려물질이 0.1중량%를 초과하고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고품안제품 포함	· 완제품에 대해서만 신고의무 부여	· 위해우려물질은 환경부장관 고시 예정
선임자(OR) 책임	· 처벌 대상 불명	· 처벌 대상 명확화 · 선임자에게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OR은 REACH 법령상의 수입자임 · OR처벌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수입자는 하위 사용자
유해성 심사대상	· 전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 등록서류 중 5%만 상세 심사	· 우선순위 부여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관리	· 관리 대상	· 타법 이관	· 별도의 살생물제법 있음	· '살생물제법' 제정 후 이관

의하다. ‘화평법’의 제품과 ‘살생물제법’ 상 생활화학제품의 정의가 상이한 것이다.

2. 현행 화평법, 개정안, REACH 법령 비교

개정안에 따른 화평법의 업무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3. 화평법 개정 일정

향후 예정된 화평법 개정 일정(안)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제출 : 2017년 4월 예정
- 개정법 공포 : 2017년 하반기

- 개정법 시행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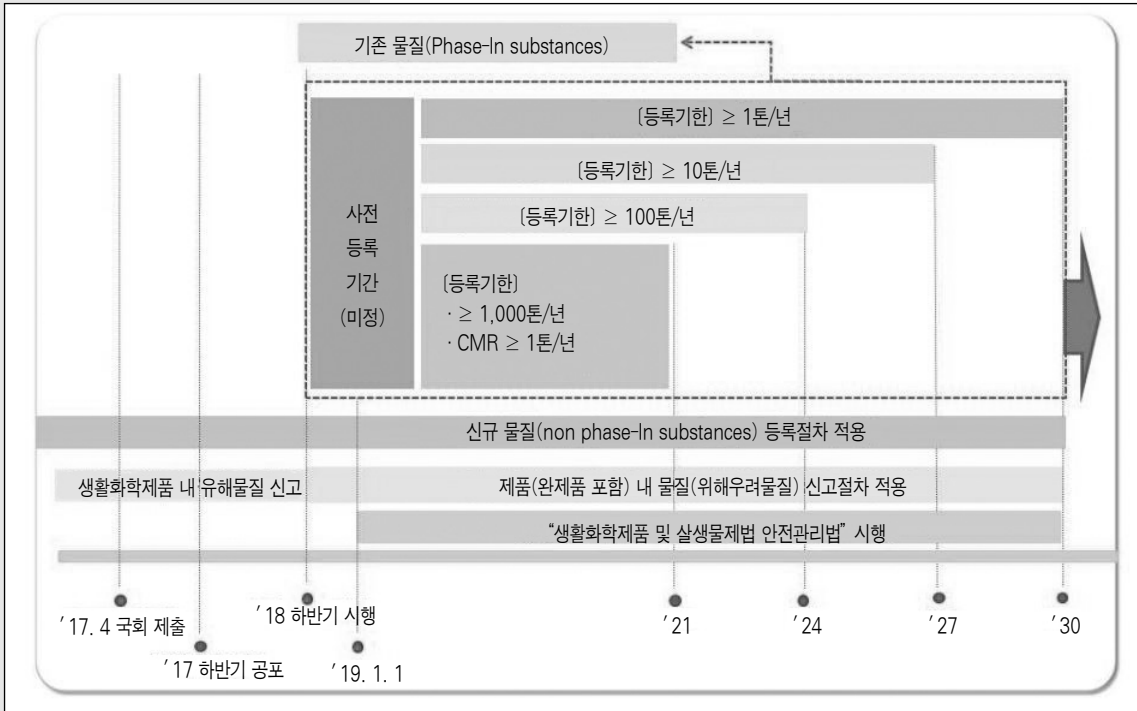
- 기존 물질 사전등록기간 : 미정

- 사전등록 시 물질등록 유예기한

· 1,000톤 이상 또는 1톤 이상 CMR물질 : 2021년까지

· 100~1,000톤 물질 : 2024

(그림 2) 화평법 개정 일정(안)



- 10~100톤 물질 : 2027년 까지
- 1~10톤 물질 : 2030년까지
- 위해우려물질 고시 : 미정

Ⅲ. 산업영향 및 기업 대응방안

1. 산업영향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로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등록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등록의 무 불이행 시 벌칙(징역 또는

벌금) 이외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등록의무가 없는 하위사용자(사용·판매자)도 처벌됨에 따라 공급망 내에서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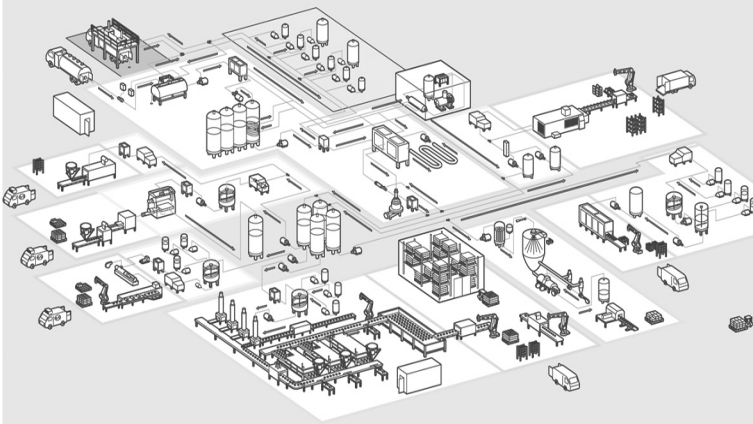
소비자용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고형완제품도 위해우려물질이 일정농도 이상 함유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제품 내 위해우려물질 함유여부의 확인을 위해 공급망 내 의사소통 및 화학물질 정보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양수할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안전사용정보 등

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리법 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별개이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전달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 기업 대응방안

향후 하위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무사항 변경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사전등록, 유예기간 등을 확인해 사내 업무 추



진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협력사 교육을 통해 화평법 이행의 필요성 및 방법을 안내하고, 수입자의 경우 해외 제조자에게 물질 등록을 요청한다. 구매부서는 상위 공급자로부터 물질등록정보, 유해물질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

객사의 정보요청 대응을 위한 내부 정보관리 및 전달체계를 수립한다. 인벤토리 구축 및 규제대상 물질정보 관리를 위한 사내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때 국제환경 규제 기업지원센터가 개발·

발급 중인 물질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또는 사업장 안전 화학물질 전주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PM]

참고자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6.01.27.)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2016.11.2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6.12.28.)
- 화평법 개정 관련 공청회(2017.01.23.)
- 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결과반영 수정안 간담회(2017.02.15.)

MEMBERS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